

광주광역시 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0년 12월 8일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2월 11일 회부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 12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지방세과장 조택용)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 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25조, 제26조)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을 삭제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삭제 (안 제3조)
 - 지방세법 제270조④에서 감면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본문 관련법령 정비 및 신설 (안 제12조)
-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설립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2조, 제13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 (안 제25조, 제26조)
- 감면시점을 명확히 함. (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 조문정리 (안 제1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 감면축소
 - 안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85 m²에서 60m²이하로 축소
 - 안 제1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전환
 - 안 제18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면허세 과세전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 재 영)

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임.

안 제1조에 대한 의견임. 안 제1조는 현행 조례 제1조 중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로 개정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처럼 개정한다고 하여 본 조례의 목적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개정안의 규율방식이 일반적인 법조문 규정방식에 따른 것이 판단됨.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안 제2조의2 제2항, 안 제12조, 안 제12조의3)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임.

지방세법에서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는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60조, 제161조),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6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을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제124조 제1항), 별표 제1종 제22호를 삭제하여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안 제3조)의 삭제에 대한 의견임.

조례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자는 것이고, 그 이유로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신설)에서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임.

조례 제13조의2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그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안 제11조처럼 그 감면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들 개정안은 사권이 제한된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근거가 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조문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안 제12조 제1항, 안 제13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자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안 제15조, 제16조, 제20조에 대한 의견임.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개정하여 감면시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보유기간 동안 구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제3장의 제목변경과 안 제6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의견임.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안 제17조와 안 제21조에 대한 의견임. 현행 조례에서는 신용보증재단과 전쟁기념사업회에 구세를 감면해주는 그 대상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고유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유업무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불식하고 아울러 현행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안 제10조, 안 제14조 및 안 제18조에 대한 의견임.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의 대상을 축소하자는 안임. 안 제10조의 경우는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85㎡에서 60㎡이하로 축소하고(제2호, 제3호), 조문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자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사업소 면제의 경우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민간출자비율만큼 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안 제18조는 면제대상이었던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면허세에 대해 과세전환하자는 안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감안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25조)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안 제26조)의 신설에 대한 의견임. 안 제25조는 신기술과 지식을 실용화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집단화 및 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로 지정하여 자금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촉진정책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자는 안이며, 안 제26조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안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의 초창기 기업의 경우, 자본과 기술의 부족, 자원의 빈약, 시장의 협소 등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호 없이는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이 어려우므로 금융이나 세제 면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처럼 이들 기업에 대한 구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본 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관련법령의 개정과 취지에 따른 조문정리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함에 이르렀다는 점,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지역적으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정안처럼 개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25조, 제26조)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을 삭제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삭제 (안 제3조)
 - 지방세법제270조④에서 감면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본문 관련법령 정비 및 신설 (안 제12조)
-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설립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2조, 제13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 (안 제25조, 제26조)
- 감면시점을 명확히 함. (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 조문정리 (안 제1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 감면축소
 - 안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85㎡에서 60㎡이하로 축소
 - 안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전환
 - 안 제18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면허세 과세전환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로 한다.

제2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 제1항과 2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6조”를 “제3조 내지 제5조”로 한다.

제3장 제명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며, 제7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단서 중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1호의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제4호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각각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2조의2”를 “제9조”로 하며, 제12조의2를 본문 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 중 “2세대 이상을”을 “국내에 2세대 이상을”로 하고 제1호 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를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로 하며, 제2호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하고, 제3호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1조”로 하며, 제13조의 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본문 중 “1,000분의 3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로 한다

“제14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4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중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며,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5조”를“제13조”로 하며, 제15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본문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6조”를“제14조”로 하며,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중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7조”를“제15조”로 하며, 제17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본문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8조”를“제16조”로 하며, 제18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제1호의 본문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조 제2호의 본문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9조”를“제17조”로 하며,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본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로 한다.

“제20조”를“제18조”로 하며,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본문 중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가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를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1조, 제22조”를 “제19조, 제20조”로 하며, 제22조(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23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본문 중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를 “의한 전쟁기념사업회”로, “그 고유업무에”를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로, “동 사업에”를 “그 사업에”로 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를 “제22조, 제23조”로 하며, 제23조의3(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본문 중 “재단법인 광주·전남테크노파크(이하 이 조에서 “테크노파크”라 한다)가”를 “재단법인 광주·전남테크노파크가”로 한다.

“제23조의4”를 “제24조”로 하며, 제23조의4(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 중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당해”를 “그”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28조”를 “제27조 내지 제31조”로 하며, 제25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다)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u> 필요한 때에 <u>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u> 광주광역시서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u>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 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u>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u>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p> <p>(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u>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u> 의하여 <u>공익상 기타의 사유로</u></p> <p>-----</p> <p>-----</p> <p>-----</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p>※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p>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

1.~4.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4. (생략)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

1.~4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4.호 생략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③ <삭 제>

※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삭 제>

※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② <삭 제>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삭 제>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 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지방세법제270조제4항에서 감면

제3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우너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 5. (현행과 같음)
- 6.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주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 3. 문화재보호법 및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조지구 안의 부동산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2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2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삭 제>

※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제12조의 2(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 2(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

제12조의 3(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12조의 3(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삭 제>

종류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국내에 2세대 이상을 -----

1. -----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의2(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3조의3(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전남테크노파크

제20조(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
-----.

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 그 사업에 -----

제22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23조(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신 설)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다)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장 보 칙

제6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현행과 같음)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감면신청 등)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게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30조(중복감면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3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